발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011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는
영유아의 또 다른 생활터전이자 삶의 일부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생각과 태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개발된 자료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주기적(분기별)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해설서에서는 각 항목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자발적인 점검과 해설서를 통해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번의 자문·감수회의를 거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Contents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보육교직원용)

■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 i

■ 해설서 ······ 1

0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 3

0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 10

0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 14

0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 18

0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 21

0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25

0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 35

0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39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보육교직원용)

본 체크리스트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해설서를 통해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및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주기적인 자가 체크(분기별 1회 이상)를 통해 영유아-교사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영유아 권리 존중 민감성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번	내 용	확인
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1	낮잠 및 휴식에 대한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시간,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다.	☐
1-2	대소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놀이하려는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3	급·간식에 대한 영유아의 기호, 먹는 속도와 양을 존중해주고 있다.	☐
1-4	배변, 배뇨 등 영유아의 기본적인 생리적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5	보육교직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2-1	영유아가 만든 결과(작품, 사진, 노래, 블록, 구조물 등)에 대해 존중하며 적절히 게시되어 있다.	☐
2-2	영유아의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3-1	영유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놀이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
3-2	영유아의 흥미, 관심, 기분 및 건강상태를 전반적인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
3-3	영유아 간의 관계를 살피며 상호 역동성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한다.	☐

연 번		내 용	확인
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4-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4-2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3	양육자의 보육실 참관(절차 및 방법, 안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5-1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상태(기분, 건강, 배변 등)와 가정 내 주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5-2	양육자에게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등 안정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5-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자와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
	6-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
	6-3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7-1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7-2	보육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1	어린이집 운영(보육과정, 특별활동, 견학, 행사 등)의 계획과 평가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8-2	반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회의를 통해 협력 및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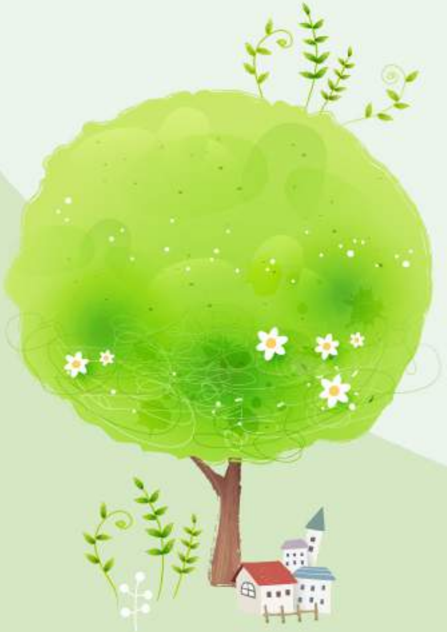

0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면 먼저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아동권리'에 대한 관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에 앞서 인간의 권리, 인권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로 정의된다. 이것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인간의 권리,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1] 더불어 존엄성이란 인간이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영유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인권의 주체자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써 영유아가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 낡은 사람은 새사람을 위하고 떠받쳐서만
>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고
>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
> \- 1930년 소파 방정환 선생 -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유네스코협동학교 길라잡이(20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학림학사(2007),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유아는 적지 않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과 함께 생활한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인생의 가장 급격하고 중요한 성장·발달의 시기를 함께하는 전문가로써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영유아 권리 존중을 실천하는 보육은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책무이자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의 보육환경이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보육교직원 개개인이 보다 민감하게 영유아의 권리를 생각하고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한다면, 환경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의 권리 존중은 일과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권리에 보다 민감해지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하루 일과 중 나타날 수 있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으로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하자.

〈표 1〉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와 부적절한 이유

하루 일과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3]	부적절한 이유
등원 및 맞이하기	"울면 아기 되는데" "울음 뚝 그쳐요." "이러면 엄마 힘들지?" "씩씩하게 헤어져야 착한 친구지?"	•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영유아의 감정을 읽어주기 보다 교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영유아의 행동을 지적하며 주도적인 훈육을 하고 있다.
자유선택 활동시간	"친구 힘들게 하는 사람은 혼자 놀이 하세요." "애기처럼 욕심내는 친구는 동생 반에 가세요." "고자질하면 나쁜 친구에요." "그거 친구에게 얼른 나눠줘. 욕심 부리면 놀이 못해."	• 또래와 갈등상황에 있는 영유아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지 않고 교사가 위협적인 말투로 다소 강압적인 지시, 경고, 비난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루 일과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3)	부적절한 이유
정리정돈	"00는 또 정리 안하는구나." "정리안하면 놀이도 하지 마세요." "다음에 놀이하지 마세요." "정리도 못하니? 우리는 정리하고 재미있는 거 할 건데 00는 재미있는 거 못 하겠다." "000야 블록을 던지면 어떡해. 다른 친구들은 정리하고 있잖아. 너도 얼른 정리해."	• 정리를 완전하게 해내는 일은 영유아 발달에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영유아에게 정리정돈만을 강요하고 행동을 비난, 비판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난과 비판은 영유아에게 저항감과 무력감을 갖게 하고 교사와의 친밀감을 떨어뜨린다.
대소집단 활동	"자꾸 떠들거니?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잖아." "열 셀 동안 카펫에 모이지 않으면……" "똑바로 앉아라."	• 교사는 대소집단 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집중시킬 수 있는 더 적절한 교수법, 시간,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집중하지 않는 것을 영유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명령·지시를 하는 것은 영유아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실외활동 및 견학	"너 혼자 여기서 놀이해. 우리는 들어갈 거야." "자, 앞 친구 보고 줄 맞춰서 가야지" "(사진 찍을 때) 웃어봐, 움직이지 말고, 여기 보세요"	• 실외활동은 자유로움 속에서의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한다. • 탐색 및 활동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 실외활동이나 견학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한다.
간식 및 점심시간	"뱉어도 소용없어" "~는 밥도 잘 먹는데, 넌 왜 못 먹니?"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젓가락질을 못 하는 거니?" "내가 분명 긴 바늘이 6자에 갈 때까지 밥을 다 먹으라고 이야기 했으면 그렇	•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간식 및 점심식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인 욕구와 성향이 존중되어야 한다. • 영유아 간의 비교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비교당하는 영유아가 열등의식을 갖게 한다.

하루 일과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3]	부적절한 이유
	게 했어야 하지 않니? 옆에 00가 자꾸 말 시켜서 못 먹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니?”	• 영유아가 참여하여 함께 정한 약속이 아닌, 보육교직원 주도의 일방적인 약속은 지양해야 한다.
기저귀 갈이 및 화장실 가기	“또 응가 했니? 너무 많이 먹었나 보네.” “또, 가니? 아까 다녀오지 않았니?” “아휴, 힘들어 죽겠네. “선생님이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봐줄게.” “지금은 안 돼, 00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면 다녀오세요.”	• 배변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주거나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배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이다. • 영유아의 자유로운 배변을 인정하거나 이해해주지 않고 영유아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낮잠 시간	“경찰아저씨 데려가세요.” “눈 꼭 감아, 누가 눈뜨니?!”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친구 자는데 방해가 되요.” “잠 안 자는 친구는 아기 반에서 자고 와야겠네.”	• 낮잠시간에 영유아의 개별적인 신체 리듬을 존중하여 강압적으로 지도하지 않도록 한다. • 가정에서의 영유아의 수면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수면 습관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위협적으로 낮잠을 강요하고 있다.
귀가지도	“놀이하던 거 빨리 정리해, 이제 가야지요.” “그 놀이는 내일도 할 수 있어요. 얼른 제자리에 두고 오세요.” “엄마 곧 오시니깐 울지 좀 마” “엄마 올 때까지 가방매고 가만히 앉아 있어”	• 귀가시간 전에는 영유아가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새로운 놀이나 과도한 자극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로 영유아에게 귀가를 강요하는 것은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엄마가 늦게 오는 이유와 영유아의 불안하고 속상한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영유아가 우는 행동을 그치기 위한 지적만 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20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참고 수정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공감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실수할 수 있다. 가령 말로 표현되는 것 외에도 보육교직원의 말투,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의 미묘한 차이로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날 수도 있다. 또한, 혹시라도 영아가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면전에서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보육교직원은 언어적인 표현뿐 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영아와의 상호작용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영유아를 달리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반응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하루 일과에 따른 적절한 보육교직원의 태도

하루 일과	적절한 보육교직원의 태도
등원 및 맞이하기	- 영유아의 기분과 건강상태 확인하기 - 몸을 낮추어 영유아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투로 영유아의 정서적으로 안정 도모하기 -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영유아의 정서 읽어 주기 (등원 이후에도 양육자를 찾는 경우 영유아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하원 시 부모와 만날 시간 이야기해주기)
자유선택 활동시간	-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싶지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영유아인 경우, 교사가 함께 놀이한 뒤 또래와의 놀이 촉진하기 - 영유아간 갈등 상황 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어주고(영유아가 스스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감정 반영하기 - 문제 해결 기회 제공 및 행동 칭찬하기
정리정돈	- 지시어 보다는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안내하기 - 연령에 적합한 개별적인 정리 목표세우기 - 교사가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기 - 활동 정리 시 다음 활동 미리 알려주기 - 칭찬을 하여 스스로 정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하루 일과	적절한 보육교직원의 태도
대소집단 활동	-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시간, 교수법, 장소 등) -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바른 자세의 필요성 알려주기 - 장난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기대하는 행동 제시하기 - 활동시간에 참여할 기회 주기 - 영유아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긍정적인 피드백하기
실외활동 및 견학	- 영유아가 바깥외출을 불안해 할 경우, 영유아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상황 설명하기 - 교사와 손을 잡고 앞에서 같이 걷기
간식 및 점심시간	-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여 적절한 도움주기 - 일방적 지시 보다는 스스로 식사 할 수 있게 도움주기 - 스스로 먹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 할 때 격려하기 - 영유아의 기분상태를 체크하여 식욕 및 개인차 존중하기
기저귀 갈이 및 화장실 가기	-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가지 않는다면, 원인 확인하기 (기분, 건강상태) - 불안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상호작용하기 - 영유아의 배변시간 체크 및 자유롭게 다녀오도록 하기 - 교사가 청결한 모습을 보여 모델링 되어주기
낮잠 시간	-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어 편안한 낮잠이 되도록 돕고 이불은 적당히 덮어주기 - 교사가 함께 누워 영아가 안정되도록 도움주기 - 스스로 하는 유아에게는 격려해주고, 교사가 도움주기
귀가지도	- 엄마를 기다리는 영유아의 감정을 읽어주고 안심시키기 - 어린이집의 놀잇감을 가져가려 하는 경우, 마음을 이해해주고 물건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기

출처: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이해하기 2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참고 수정

유엔아동권리협약 中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나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 상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 中

제6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놀이 및 쉴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0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참여권을 이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어린이는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어른은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유아들은 일상에서 부모들을 비롯한 성인에 의해 생활 전반이 결정되는 경험을 주로 하게 된다.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어른의 생각이 아이들의 생각보다 옳지."라고 생각하는 보육교직원과 양육자는 종종 영유아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영유아들에게 무조건 따르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에서 역시 단체 생활 속에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영유아에게 잦은 줄 서기, 정해진 자리에서의 식사, 협조적인(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유아는 주체적인 존재이므로 영유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선택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키우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 일과 중에서 영유아들이 선택권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영유아가 급·간식 시간에 얼마만큼 먹을지에 대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전이시간(줄 서기, 이동하기, 기다리기)에 영유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다. 또한 영유아가 낮잠시간에 낮잠 자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게끔 도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이 내린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영유아의 의사를 존중한 보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체제에서 성장한 기성세대인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개별적인 의사나 욕구를 반영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영유아 대 교사 비율로 대집단 활동이 많아지고, 양육자가 어린이집에서의 선행 학습이나 특별활동을 요구하여 원내 구조적인 교육이 증가하면서 교사가 영유아 개별 의사를 보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영유아의 의견이 반영된 보육과정에서 영유아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참여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영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이 진행 될 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늘 영유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영유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주도하에 있는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영유아가 자유롭게 참여하며 함께 배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교사의 관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논의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영유아의 의견을 보육과정에 반영한 주제를 정할 수도 있다. 영유아가 만든 작품이나 활동의 결과물을 그들과 함께 정한 곳에 게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가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알아보고 견학 장소와 행사를 계획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 운영에도 영유아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하거나, 원복, 체육복, 가방 등을 바꾸는 경우, 몇 가지 중 하나를 영유아가 직접 선택하는 투표 방법을 통해서도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육과정 및 어린이집 운영 시, 작은 것부터 영유아와 교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자연스럽게 보육환경 전반에서의 영유아의 참여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中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나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 상 필요한 경우

제23조(자기결정권)

어린이·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참여권)

① 어린이·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를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⑦ 어린이·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⑧ 어린이·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시장은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⑩ 어린이·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해 알 권리, 상담 및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0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선택활동시간은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자유선택활동시간은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교사는 진정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는 놀이를 하며 기본적인 개념을 획득하고,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태도를 배우며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영유아의 놀이가 더 풍부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놀잇감, 공간 구성, 면적 등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적절한 상호작용도 중요하다. 보육교사가 놀이에 적절한 개입을 할 때 아이들은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며 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보육교사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격려하기보다 놀이를 가장한 교사 주도의 교육활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진정한 놀이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몰입, 집중력, 탐구적 태도를 향상시키며 사고력, 창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흥미와 상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여 적절한 놀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유선택활동시간은 보육교사가 영유아 개개인의 흥미, 욕구, 감정 상태를 보다 잘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보육교사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도적인 관찰을 하며 아이들 각각의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현재의 컨디션, 감정, 사회적 관계까지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영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여 아이들마다 각각 다른 반응과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는 교사와의 개별적 만남을 통해 교사의 관심과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에 즉각적이며 부드럽게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영유아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영유아 권리 존중의 첫걸음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교직원의 태도는 영유아를 동등하고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보육교직원은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영유아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기반을 둔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단순히 가르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영유아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즐거운 표정으로 눈을 맞추며 영유아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주며 적절한 반응과 격려를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자유선택 시간 동안 영유아들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과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영유아와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보육실 전체를 살펴야한다. 하지만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황도 간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연에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교사가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 혹은 영유아 간의 다툼, 사고 등이 일어난다면, 교사는 즉시 개입하되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영유아 간의 다툼이 예상될 때, 때린 영유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 생각되어지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훈육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교사는 갈등상황 시 다툼 혹은 사고 상황에 있었던 영유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영유아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유아는 스스로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으며, 문제해결기술과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가 스스로 찾은 문제해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영유아의 자율성을 키우는 동시에 영유아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

〈표 3〉 보육교직원-영유아의 상호작용과 교수법

항 목	고려해야 할 점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 영유아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는 것은 영유아를 존중하는 기본태도이다. - 개별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영유아가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는다. - 교사는 영유아의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영유아를 평등하게 대하며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 영유아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언어적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긍정적 끄덕임, 미소, 토닥거림 등 비언어적으로도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선 수용해 주어야 한다. - 영유아가 때때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울음, 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우선 영유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 방법(예: 칭찬과 격려, 이유 설명, 대안제시 등)으로 지도한다. - 교사는 영유아와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하고,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하며, 영유아의 자율적인 행동을 칭찬한다. - 교사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모델이 되어야 한다. - 가족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는 부모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 영유아가 또래보다는 교사에게만 상호작용을 시도할 경우,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이들의 언어나 행동, 표정, 놀이 진행과정 등을 잘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서로 간의 배려나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 교사는 자유놀이에 참여할 때 개별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이나 흥미, 기질,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특성이나 발달 수준을 잘 관찰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 목	고려해야 할 점
	- 영유아의 놀이 전환이 잦거나 흥미를 잃을 때, 놀이가 지속되고 놀이의 내용이 확장되도록 돕는다. - 영유아의 연령과 놀이 종류에 따라 보육교사의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한다.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 교사는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객관적 중재자로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영유아가 타인의 입장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적절히 개입하여야 한다. - 영유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경청하도록 한다. 이후,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나 갈등 상황에서는 영유아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 -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면, 교사는 즉시 개입하되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유아를 훈육하지 않도록 하며, 영유아의 감정을 읽어주고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출처: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영역4. 상호작용과 교수법. 참고 수정

유엔아동권리협약 中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